

### 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4년 10월13일

발 의 자 : 조계숙의원외 6인

#### 제안이유

- 소속행정기관중 외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,
-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

#### 주요내용

- 외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속기관으로 명칭변경하고
- 의회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중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도 교육청으로 개정

#### 참고사항

-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## 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  
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중 "교육청"을 "충청북도교육청"으로, "외청"을  
"직속기관"으로, "교육위원회"를 "도 교육청"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범위) 1. ~ 6. (생략)</p> <p>7. 충청북도 및 <u>교육청의</u> 외청 또는 사업소 소속 공무원중 도본청 및 <u>교육위원회의</u> 실무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</p>	<p>제2조(범위) 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충청북도 및 <u>충청북도교육청의</u>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공무원중 도 본청 및 <u>도 교육청</u> 실무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</p>